

##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9
----------	-----

### 제안이유

- 자구 및 직명 수정을 통하여 조례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자구 수정 (각호의 → 각호의 1의)
- 직명 변경 (중등교육장 → 교육국장)

### 첨 부

-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중 “중등교육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제10호중 “각호의”를 “각호의 1의”로 한다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①-②(생략)</p> <p>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<u>중등교육장</u>, 충청북도지방경찰청방범과 과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관계기관·단체장, 교육장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①-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</p> <p><u>교육국장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	<p>제10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실무위원회에</p>	<p>제10조(실무위원회의기능).....</p>	<p>서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조정 심의한다.</p> <p>1.-4.(생략)</p>	<p><u>각호</u>의1의.....</p> <p>.....</p> <p>1.-4.(현행과 같음)</p>